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5. 8. 22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6 회 임시회

. 제 3 차 내무위원회 (1995. 8. 22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'95.5.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(도로, 하천등)의 취득시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추가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지정
 - . 기타지역 : 400㎡ ⇒ 700㎡로 확대
 - 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
-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.
-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관사에서 1, 2급관사로 확대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삭제와
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조문정리
와 일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 내용으로는

-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인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조문에서 삭제하고
분수림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규정을 준용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

받도록 한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는 등과 공유재산의 유상대부 또는 사용허가등의 일부 조항과 관리부문을 삭제하고
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시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 추가
-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지정
-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 관사에서 1, 2급관사로 확대 등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안)
- . 신구조문대비표